

KERI Brief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keri.org)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사전적 사업재편과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재무구조개선을 세제상 지원하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구조조정(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세제는 주로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한 특례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특법에서 정하는 한시법인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주로 상시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경제위기 하의 기업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 체계, 상시화, 조세혜택 수준 등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지원세제도 사업재편계획 지원세제처럼 조특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일괄

적으로 규정된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이나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다른 주요국의 세제와의 비교 및 지원대상의 필요성 측면에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현재 모법인 원상법이 한시법인 부분을 고려하여 상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로 과세이연 방식인 현행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혜택은 기업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상시화 후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우선 모법인 원상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상시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조세혜택 수준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점은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구조조정을 관할하는 법령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계 중심으로 분석함
- 특히 구조조정세제 중 사업상 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상황에 직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즉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관련 지원세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¹⁾
- 우리나라 세제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업구조조정 세제와 비교한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1) 합병, 분할 등 기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세제와 현물출자 등 소유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세제는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함

II. 국내외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현황

□ ‘사업구조조정’이란 통상 조직운영의 효율성, 기업 지배구조의 변경 또는 연속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재편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함

-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유입되는 자원의 낭비를 막아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투자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²⁾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이 세법에 신설되어 왔음
- 현행 사업구조조정 세제상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과세를 이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닐 것임

1. 국내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현황

□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크게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 관련 지원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조세특례제한법³⁾에 규정되어 있음

- 첫 번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⁴⁾에 규정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세특례 규정으로서 2015년 말 조특법 제5장의10에 신설되었음
 - ‘사업재편계획’이란 원샷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의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말함⁵⁾

- *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 총액 및 내용
- * 금융기관채무 상환계획
- *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두 번째,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또는 채권단자율협약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된 과세특례로서 조특법 제2장 제5절에 규정되어 있음

-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다음 4가지 경우에 적용됨⁶⁾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기업회생결정)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워크아웃)
 - * 조특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채권단자율협약)⁷⁾
 - * 조특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 시정조치

2) 김종봉·윤태화,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12, p.179

3) 이하 ‘조특법’이라 함

4) 이하 ‘원샷법’이라 함. 공급과잉 업종 기업(3년간 매출·영업이익률 감소, 가동률 등 기준보다 나쁠 것, 수요회복 가능성 적을 것 등)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서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재편을 돕는 것이 골자임

5)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제4항

6) 조특법 제44조 제1항

7) ‘특별약정’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말함

<p>□ 사업재편계획과 재무구조개선계획 관련 세제는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는 사업재편 지원세제에만 규정되어 있음</p> <p>○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해서는 두 계획에 모두 동일한 특례가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조특법 제34조 및 제121조의26) - 채무의 인수·변제(조특법 제39조 및 제121조의27) - 주주 등의 자산양도(조특법 제40조 및 제121조의28) - 기업의 채무면제(조특법 제44조 및 제121조의29)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조특법 제46조 및 제121조의30)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p>○ 합병 중복자산의 양도,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은⁸⁾ 사업재편계획에만 존재함</p>	<p>□ [채무의 인수·변제]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법인인 경우로 한정)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¹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그 주주 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주주 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과세이연함</p> <p>○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¹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의 채무 인수·변제로 인해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¹²⁾
<p>□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내국법인이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2021년 이전에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함</p> <p>○ 자산양도일(잔금청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p> <p>○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채무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⁹⁾가 발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함</p>	<p>8) 조특법 제121조의31, 32</p> <p>9) 1.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4. 원상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10) 법인청산계획서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포함함</p> <p>11) 다만, 청산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함</p> <p>12) 원칙적으로 채무면제 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고 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p>

○ 양도대상법인이 기준부채비율¹³⁾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¹⁴⁾가 발생한 경우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함

▣ [주주 등의 자산양도]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2021년 이전에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한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

○ 자산을 증여한 법인주주의 경우 증여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급에 산입하고,

-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1년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거나(개인주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법인주주)

▣ [기업의 채무면제익] 2021년까지 내국법인이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

○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채권자)은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급에 산입함

○ 해당 법인이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함

- 사업재편 관련 규정에서는 계획에 따른 합병·분할 등 사업 승계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익금산입 사유로 인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됨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2021년 이전에 사업재편계획¹⁵⁾에 따라 주식 등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주식 등을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 일정한 방법¹⁶⁾에 따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음

○ 주식교환 후 5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의 이전 기업 집단이 다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거나 지배주주 등이 대상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면 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기업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공제)에 충당할 수 있음

13) 기준부채비율은 ①에서 ②를 뺀 것을 말함(조특법 시행령 제34조 제16항)

① (계획이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부채 ÷ 자기자본

② 채무상환액 ÷ 자기자본

14) 사유는 계획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지 않거나, 자산양도 후 3년 이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해당 사업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이 승계하지 않고 폐업·해산한 경우임

15) 재무구조개선계획 관련 규정은 2017년 일몰되어,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주식 교환의 경우에 적용됨

16) 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 등을 처분할 때 과세하고, 법인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채무상환조건으로 액면가액 10,000원(시가: 12,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13,000원으로 발행한 경우,¹⁷⁾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1,000원을 채무면제익으로 봄 ○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함 <p>□ [합병 중복자산의 양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같은 업종 간 합병하여 중복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1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이연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 3년 내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¹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을 위한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요건에서 대가의 주식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춤 <p>2. 주요국의 사업구조조정세제 현황</p> <p>가. 미국¹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세제는 채무와 관련된 이익에 대한 비과세만 있으며, 이외에 사업적·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세제는 없음 □ 일반적으로 채무의 면제(debt cancellation)는 채무자의 소득에 가산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파산법(Bankruptcy Code)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면제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파산법에 따른 파산사건에서 발생, 채무자의 파산(insolvent)이 이루어진 부분 중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파산법이란 미국 파산법(Title 11-Bankruptcy)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률에 속하는 법인은 채무면제 소득을 비과세할 수 있음²⁰⁾ ○ 파산사건 또는 파산에서의 채무면제가 총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손금 등 세액속성²¹⁾에서는 차감(reduction of tax attributes)됨 - 파산사건 등의 채무면제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결손금 등의 세액속성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져 완전한 형태의 비과세는 아니고, 일부 과세이연의 효과를 유도하여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함 ○ 채무면제와 유사하게 파산절차 등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함 - 주식을 발행하여 채무상환 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채무면제와 유사하게 세액속성에서는 차감됨
	<p>17) 발행가액을 채무출자전환금 상당액으로 보며,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이므로 익금불산입됨(법인세법 제17조)</p> <p>18) 사업재편계획이 취소된 경우도 포함함</p> <p>19)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2)</p> <p>20) 미국 파산법은 파산 및 이에 따른 청산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회생·화의 등을 포함한 광의의 파산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미국 파산법인 Title 11은 제7장 청산(liquidation)뿐만 아니라 제11장 재편성(reorganization)도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음</p> <p>21) 세액속성은 결손금, 통상적인 영업상 세액공제 이월액, 자본손실, 자산의 세무상 유보액, 수동적 손실과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해당됨</p>

나. 일본

□ 일본은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 지원으로서 등록 면허세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재무상 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의 등 익금에 대해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 [사전적 구조조정]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했고,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했음²²⁾

○ 동법에서 사업재편 촉진 지원세제는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수익성·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 한정함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계획은 재무건전화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 고용 면의 배려, 사업구조변경 등이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으며²³⁾ 등록면허세 경감, 채권포기 시 자산평가손 손금산입제도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²⁴⁾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인정계획에 대해 특정사업재편 투자손실준비금,²⁵⁾ 생산성향상 설비 투자촉진세제²⁶⁾ 혜택을 과거에 제공했으며, 현재 등록면허세경감제도와 채권포기 시 자산평가손 손금산입 제도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음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채권포기²⁷⁾를 포함한 재편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자산평가 갱신 시에 자산평가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미실현손실이 있는 자산은 처분 후 손금산입해야 하나, 채권포기를 받을 예정인 사업재구조계획 인정기업에 한해 자산평가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22) 2014년 제정 당시 5년 한시법으로 규정했지만, 2018년 5월 개정 시 3년의 기간을 추가함

23)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재편계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재무건전화, 고용 면의 배려, 사업구조변경, 진취적인 대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생산성 향상(기업단위): 계획 개시 후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달성할 예정이어야 함

① ROE(자기자본이익율) $\geq 2\%$, ② 유형 고정자산 회전율 $\geq 5\%$, ③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geq 6\%$

- 재무 건전화(기업단위): 계획 개시 후 3년 이내에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해야 함

① (유이자부채/현금흐름) ≤ 10 , ② 경상수지 \geq 경상지출

- 고용 면의 배려: 계획 관련 사업소 내 노사조합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고용안정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함

- 사업구조변경: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함

① 합병, ② 회사 분할, ③ 주식교환·주식이전, ④ 사업·자산의 양수도, ⑤ 출자 취득, ⑥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획득, ⑦ 회사 설립, ⑧ 유한책임사업조합에 대한 출자, ⑨ 상당수준의 시설·설비 철거 등

- 진취적인 대응: 계획 개시 후 3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달성할 예정이어야 함

① 신상품, 신서비스 개발·생산·제공, ② 상품 신생산방식 도입, 설비 능력 향상, ③ 상품 신판매방식 도입, 서비스 신제공방식 도입, ④ 신원재료·부품·반제품 사용, 원재료·부품·반제품 신규입방식 도입

24)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eti.go.jp/policy/jigyousaisei/kyousouryoku_kyouka/saihen_2.html)

25) 특정사업재편투자 손실준비금 제도를 통해 자회사를 분리한 모회사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했음. 청색신고법인이며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인정받은 자가 계획상 기재한 특정사업재편 관련 특정회사의 특정주식 등을 각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인계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임

-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인정받은 사업부문을 분리·통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리·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회사에 대한 출자·융자금액의 70%까지를 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적절한 준비금은 원칙상 적립기간(10년간) 종료일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균등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함

26) 2014년 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청색신고법인 이 특정생산성향상 설비 등을 취득하여 국내에 있는 당해법인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일을 포함한 사업연도에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했음. 특별상각한도액은 특정생산성향상 설비 취득가액의 50%(건물·건축물일 경우 25%) 상당액으로 하되, 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취득·사용한 설비에 한해 취득가액 전액을 즉시 상각할 수 있도록 함

27) '채권포기'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융자대상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거래처 기업에 대한 경영재건지원책 중 하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재편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인정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출자 수취, 자산양수도, 회사 설립 등을 할 경우 관련 등록면허세를 경감함 □ [사후적 구조조정] 회사갱생절차나 민사갱생절차에서 채무면제의 등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산입을 통해 세제지원함 ○ 「법인세법」 제59조의1에 따라 회사갱생절차상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면제의 등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이익은 익금처리하되 이월결손금 산입을 통해 최대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면제의 등은 총 3가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면제의, 임원·주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의, 자산평가액에서 자산평가손을 공제한 금액임 ○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민사재생절차²⁹⁾상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면제의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이익은 익금처리하되 이월결손금 산입을 통해 최대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산했으며 잔여재산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청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함 ○ 다만, 특정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특정동족회사가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유보금 과세³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h3>3. 비교 및 시사점</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나 법체계 및 내용은 우리나라와 상시법 및 조세혜택 수준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사후적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특법에서 정하는 한시법인 반면에 다른 주요국들은 상시법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전적 구조조정에 대한 법령 및 이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며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은 미국의 경우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만 있는데, 그 내용도 결손금 차감 등(비과세)으로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채무면제 이외에도 자산매각, 채무인수 변제, 주주자산양도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4년 이연(거치) 이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형태임(과세이연) - 일본은 주주의 자산양도에 따른 수증이익·채무면제의 및 자산평가액에 대해 기간 등의 제한없이 과거 결손금 발생액과 상계를 허용함
	<p>28) 손금산입액은 이월결손금액과 채무면제의 등의 총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하며, 기한이 지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여 이월결손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p> <p>29) 민사재생절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건형 도산제도로 회사갱생절차와 유사함. 양자의 차이점을 보자면 민사재생절차는 모든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 계획을 재건 당사자가 제출하고, 회사갱생절차는 경제적 곤경을 겪는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함</p> <p>30) 「법인세법」 제67조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과세제도’는 주주가 배당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동족회사의 내부유보금에 대해 특별한 법인세를 가산 부과하는 제도임</p>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현행 세제의 문제점

□ [법적 체계] 재무구조개선계획 관련 지원세제에 해당하는 6개 규정 중 5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고, 1개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음

- 성격이 동일한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일관성 없이 혼합 규정되어 있어 사업재편계획 조세특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출자전환시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사업구조조정법 제44조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조세법 제44조)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의 예외조항으로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 [상시화] 조세법상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2021년 일몰로 한시적인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상시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는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기초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생산·소비·수출 충격이 발생했고,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자금난으로 줄도산이 우려됨
- 항공업,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며,³¹⁾ 그 대응책으로서 경쟁력 있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함

- * (항공업) 작년 4분기 적자에 이어 올해 해외입국제한조치 및 운항중단으로 상반기 6.3조원 매출피해 예상, 업계가 생사기로에 선 상태
- * (자동차) 공장셧다운 확산, 판매절벽 가시화, 국내 2만여 개 부품업체의 구조조정·도산 위험이 커져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위기
- * (정유·화학) 작년부터 이어진 정제마진 악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연료수요 급감, 유가폭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이 겹쳐 업계 최대 위기 상황
- * (철강) 완성차 생산중단, 선사 발주연기 등 철강 전방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어 도미노식으로 철강업계가 수요급감, 재고급증 직면³²⁾

- 한편, 금융감독원의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기업들이 부실징후기업이 될 수 있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할 제도가 계속 필요함³³⁾

31)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2020.3, p.3
 32) 한 철강기업은 '19.4분기 29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단조사업 물적분할 단행, 강관사업부 매각검토 등 사업구조개편을 착수했음
 33) 정기 신용위험평가상 부실징후기업이라고 해서 채권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이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해당될 수밖에 없음

〈표 1〉 부실징후기업 수 추이

(단위: 개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증 감	
세부평가대상	합 계	2,874	2,637	2,906	2,952	3,307	+355
	대 기 업	940*	602	631	631	599	△32
	중소기업	1,934	2,035	2,275	2,321	2,708	+387
부실 징후기업	합 계	229	208	199	190	210	+20
	C등급	97	84	74	53	59	+6
	D등급	132	124	125	137	151	+14
	대 기 업	54*	32	25	10	9	△1
	C등급	27	13	13	5	3	△2
	D등급	27	19	12	5	6	+1
	중소기업	175	176	174	180	201	+21
	C등급	70	71	61	48	56	+8
	D등급	105	105	113	132	145	+13

주: *는 수시 신용위험평가 포함(세부평가대상 368개사, 부실징후기업 19개사)

자료: 금융감독원,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2019.12.

○ 다만, 사업상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업이 자력으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계획의 적용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 또한 채권금융단이 채권상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를 계획의 적용을 받도록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도 가능함

□ [조세혜택의 적정 수준]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조세혜택은 대부분 4년 거치(이연) 후 3년간 과세이며, 자산양도의 법인주주는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³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시급해졌지만, 1차적으로 원상법의 적용대상 제한³⁵⁾ 문제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³⁶⁾ 적용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사업재편 지원세제의 혜택 수준 때문에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할 수 있음

- 원상법의 한정된 지원대상과 낮은 조세혜택 때문에 사업재편 승인 현황은 2017년 52건, 2018년 34건, 2019년 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34) 주주 등의 자산양도는 비과세이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는 3년 이연 후 3년간 과세임
- 35) 원상법의 적용대상은 '과잉공급업종 소속 기업, 신산업 진출 기업, 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36)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부실 계열사나 사업부문을 정리해 코로나19의 충격을 대비하려는 기업이 원상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고, 심사기준도 엄격해서 현재 도산위기에 처한 항공운송업마저도 원상법을 적용받기 어려움. 과잉공급업종 선정기준을 보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최근 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은 최근 3년 평균실적(9.49%)이 최근 10년 평균(7.77%)보다 높아 원상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함. 코로나19에 폭락한 국제유가의 영향까지 받는 정유업종도 석유화학의 경우 3년 평균(11.09%)이 10년 평균(8.57%)보다 높아 원상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 사업구조조정세제의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과세를 이연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조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재편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임
- 조특법상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과 다르게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의 상시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결손금 보전 시까지 이월됨
-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와 일반적인 채무면제는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임
- 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비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지 않아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사업구조조정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주주가 해당 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구조조정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 개선방안 제언

□ [법적 체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지원세제도 사업재편계획 지원세제처럼 조특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함

-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제5장의10) 다음 장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5장의11)를 배열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2항의 출자전환 시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조특법으로 이전 규정해야 법체계상 일관성을 가질 것임
- 일괄적으로 규정된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이나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임

- 특히 기업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세제를 더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택·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상시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다른 주요국의 세제와의 비교 및 지원대상의 필요성 측면에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함

- 주요국 모두 지원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대상기업 증감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급증할 수 있는데, 주요 원인인 경제위기나 불황은 예측할 수 없음
- 사업재편 지원세제도 현재 그 필요성이 커지고 시급해졌지만,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현재 모법인 원상법이 한시법³⁷⁾인 부분을 고려하여 상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원상법의 상시화와 함께 사업재편 지원세제의 상시화도 이뤄져야 함

- 일반적으로 사업구조조정에서 경영진 또는 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 주체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세법상 고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³⁸⁾

-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채권은행자율협의회, 법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무부처의 장이 계획의 승인 등 일정 부분 통제를 하게 되어 권한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감소될 수 있음

37) 202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

38) 홍성훈 등, 구조조정 지원세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6, p.95

□ [조세혜택의 적정 수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재무구조개선 관련 지원세제를 상시화한 후 비과세를 해주는 것도 고려할 만함**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경우 기업 정상화 시 미국은 채무면제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기업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
 -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우선 모법인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³⁹⁾와 상시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조세혜택 수준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함
- 또한 채무면제는 출자전환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다를 이유가 없지만, 세법상 다른 대우⁴⁰⁾를 하고 있어 과세특례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함
- 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점은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함
 - 지배주주(대주주)의 경우 기업의 위기 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인수하는 것인데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오인한다면 그 지원이 소극적이게 될 것임
 - 재무구조개선이나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의 경우 증여 목적이 크지 않을 것이고, 주주 등이 채무상환을 위해 채무변제나 자산양도 행위를 한 것은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주주들에게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자 함이 아닐 것임

39) 원샷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전산업)으로 확대해서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함

40)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 부분은 결손금으로 보전 시까지 계속적으로 이월되나 일반적인 채무면제는 기간을 한정하여 이월하고 있음

IV. 요약 및 결론

□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사전적 사업재편과 부실 기업에 대한 사후적 재무구조개선을 세제상 지원하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하고 있음

- 사업구조조정(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세제는 주로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한 특례로 이뤄져 있으며, 합병 시 중복자산의 양도, 주식교부비율 등에 대한 특례는 사업재편계획에만 규정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 사업구조조정 과세특례가 존재하나 법체계 및 내용은 우리나라와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특법에서 정하는 한시법인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주로 상시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경제위기 하의 기업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체계, 상시화, 조세혜택 수준 등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지원세제도 사업재편계획 지원세제처럼 조특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함

- 일괄적으로 규정된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이나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임

○ 두 번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다른 주요국의 세제와의 비교 및 지원대상의 필요성 측면에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사업재편 지원세제는 현재 모법인 원상법이 한시법인 부분을 고려하여 상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주로 과세이연 방식인 현행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 혜택은 기업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상시화 후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우선 모법인 원상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상시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조세혜택 수준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함

- 또한 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점은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함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6월 10일 | 발행인 권대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